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

① 정책사업명	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		
② 추진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「방송채널정책운용방안」을 의결하여 공익채널 개념 도입 (제34차 방송위원회, '04.7월) ○ 「방송법」 제70조제8항 신설로 '공익채널' 제도 명문화('07.1월) ○ 「방송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'장애인복지채널' 도 명문화 ('12.7월) 		
③ 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방송법」 및 동법 시행령, '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'에 따라 2년 단위로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익채널 선정(장애인복지채널 인정)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'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(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 기준)'에 따라 심사 실시 · (공익채널) 공익성 방송분야(방통위 고시, 제2017-12호)에 따라 각 분야별로 3개 이내 채널을 선정하되, 심사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로 추가 선정 가능 · (장애인복지채널) 장애인복지채널(복지TV)에 대한 인정 여부 심사 ○ 공익채널 선정(장애인복지채널 인정) 심사 결과 방통위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 사업자에게 선정서 (인정서) 교부 - 해당 사업자의 채널은 「방송법」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공익채널) 공익성 방송분야(사회복지, 과학문화진흥, 교육 및 지역) 별 1개 이상 채널 		
④ 사업부서	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	⑤ 담당자	신승한 과 장 이선아 사무관 서승호 주무관
⑥ 선정기준	기타	⑦ 사업기간	'04 ~ 계속

〈그간 주요 추진내용〉		
○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관련 설명회 개최 (방송지원정책과-651)	'22.08.17.	신승한 과장 이선아 사무관 서승호 주무관
○ '23~'24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 채널 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 공고 (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-058호)	'22.08.08.	신승한 과장 이선아 사무관 서승호 주무관